
인터넷상에서의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정책 방향

김기봉*

목 차

- I. 서론
- II. 불건전정보의 분류와 심의 과정
- III. 불건전정보의 유통경로
- IV. 불건전정보의 유통방지 정책 방향
- V. 향후 과제

Abstract

I.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터넷의 등장은 우리 사회를 네트워크사회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러한 전환 속에서 정치체제, 경제구조, 개인의 의식구조가 변화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수평적인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개방적 공간으로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 우리 일상생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음란?폭력물의 유통,

개인정보유출과 사생활 침해,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사기, 사이버 도박, 해킹, 사이버 테러, 바이러스, 음란 스팸메일 유포, 음란채팅, 사이버 스토킹 등으로 인한 역기능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상에서 범람하고 있는 불건전정보의 정의 및 분류, 불건전정보의 유통경로를 살펴보고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불건전정보의 분류와 심의 과정

1. 불건전정보의 정의

인터넷상의 불건전정보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의 불건전정보를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음란정보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그 내용과 형태는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불건전 정보는 일반적으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와 유통은 가능하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라 할 수 있다. 현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불법통신(불법정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①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

용의 전기통신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 ③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 ⑤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 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 ⑥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 ⑦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 ⑧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 ⑨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불건전정보의 분류

불건전정보에 대한 학계의 분류 기준은 매우 다양하다. 대부분은 유통형태나, 콘텐츠 내용 등에 따라 분류된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1) 유통형태에 따른 분류

단순히 게시되거나 유통되는 형태가 무엇이냐에

따라 불건전 정보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2) 보호차원에 따른 분류

개인의 사생활보호나 사회생활보호를 기준으로 하여 유해콘텐츠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3) 세분화 시킨 유통형태에 따른 분류

최근에는 유통되는 불건전 정보의 유형이 다양화 되어 좀더 세분화한 분류가 제시되고 있다.

3. 불건전정보의 심의과정

우리나라의 불건전정보에 대한 유통방지 기능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에 근거하여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 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불건전정보를 근절하고 건전한 정보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 유통형태에 따른 분류 >

구분	내 용	
	위성 DMB	IMT-2000
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란 게시글 • 음란 소설(야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통신 및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친 상간 등 비정상적인 내용 위주임
영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그림, 만화 • 애플릿(움직이는 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 음란물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며 단순 누드의 수준을 벗어나 성적학대 등 폭력적인 내용과 혐오스러운 내용이 부가되는 경우가 많음
동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DO, RealPlay 등 실시간 동영상물 • MPG, MOV 등 파일형 동영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몰래 촬영된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물의 유통 • 한국인 포르노 배우 등장
게 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란게임 S/W • 가상 섹스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폐적 내용의 일본 게임물이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유통됨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란대화(채팅) • 음란 사이트 배너광고(링크) • 음란물 판매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결혼 등으로 발전 • 배너 광고 자체 그림도 음란함

※ 정 완, 형사정책연구, 2000, 11(1)

〈 보호차원에 따른 분류 〉

보호차원	보호법익	유해 콘텐츠의 유형
사회생활보호	국가안전보장	무기제조, 폭탄제조, 병역기피, 약물제조, 테러활동
	사회적 풍속보호	자살사이트, 사이버도박, 사행심조장, 악성루머유포, 스와핑, 원조교제, 음란채팅
	미성년자 보호	음란영상물, 폭력물, 부정상품판매
	지적소유권 보호	S/W, 영상물, 음악, 저작물 무단배포
개인생활보호 (privacy 보호)	신뢰 및 신용 보호	스팸/메일폭탄, 불법비교광고, 해킹, 사이버사기
	인간의 존엄 보호	낙태조장사이트, 인종차별, 성차별, 인신매매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유통, 스토킹, 몰래카메라
	개인의 명예 보호	악성루머유포, 유언비어조작, 스토킹

※ 박성호, 인터넷 콘텐츠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 2001

〈 세분화 시킨 유통형태에 따른 분류 〉

유형	형태	주요내용	
문자	음란	게시글, 소설	살인, 강간 등 비정상적인 내용
	폭력		
	반국가	게시글	김일성·김정일 저작물, 노동신문 등
	사생활침해	게시글	개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 또는 허위의 내용을 게시
음성	음란	전화방, 700서비스, 국내·국제 폰팅	불건전 만남 유도, 음란·폭력적 대화
	폭력		
정지화상	음란	사진, 그림, 만화, 애플릿(움직이는 그림)	포르노그래피, 잔혹사진 등
	폭력		계급혁명을 미화하는 내용의 사진 등
	반국가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정지화상 게시
	사생활침해		
동영상	음란	MPG, MOV, RA 파일 형태의 동영상물	음란한 내용의 몰래카메라, 한국인 유학생 포르노
	폭력		실제 또는 실제로 위장된 살인, 강간장면을 찍은 스너프 필름
	반국가		조선중앙방송을 실시간 청취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
	사생활침해		몰래카메라, 셀프 카메라
게임	음란	CD, RPG, Mud 등	퇴폐, 폭력적 내용의 게임
	폭력		
기타	음란	음란, 폭력적 대화, 음란사이트 배너, 음란물 판매 광고	채팅을 통한 음란한 대화 및 만남 주선
	폭력		채팅을 통한 언어 폭력
	사생활침해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오용 및 해커에 의한 유출

※ 황주성 외, 사이버문화 및 사이버공동체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200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보면 “인터넷 119(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신고)”, “사이버 명예훼손·성폭력분쟁조정센터”에서의 신고접수와 자체

검색, 상임전문위원의 약식심의, 3개 전문위원회 심의, 위원회 안전상정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불만처리 등 이의제기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 심의 과정 〉

심의과정	심의대상인지	위원(회)상정	심 의	결과통보	회신접수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검색 ○ Internet119 (신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 전문위원회 ○ 상임전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결정 - 적합 - 부적합 : 시정요구결정 -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 및 결정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공문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결과 회신접수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사안에 따라 각 위원(회)상정 - 상임전문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효율적인 심의 • 심 의 기 준 적 용 이 명확한 경우 - 전문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인 심의 • 월1회 개최 - 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사안 심의 • 분기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요구 유형 1. 경고 2. 해당정보 삭제 3. 이용정지 4. 이용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시정 요구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결정취소 통보 	

※ 박성호, 인터넷 콘텐츠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 2001

III. 불건전정보의 유통경로

1. 해외한글음란사이트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 해외한글음란사이트이다. 이 사이트 운영자들은 대부분 한국인들로 해당 국가의 법적 제한을 교묘히 피하면서 운영되

고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인 또는 해외교포가 외국 의 서버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한글음란사이트의 이용자의 절대 다수는 한국인이고 청소년의 이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러한 해외 한글음란사이트에 대한 도메인 차단 건수가 2003년 9월 현재 379건, IP 차단은 541건에 이르고 있다.

2. 사이버커뮤니티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 수는 수 백 만 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의 활성화는 사이버 커뮤니티(공동체)가 일상공간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이트는 채팅, 카페, 동호회 클럽, 게시판, 방명록 등의 커뮤니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상호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긍정적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커뮤니티가 다양화되어 신유형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단순한 동호회 활동을 넘어서 정보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성 커뮤니티까지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포마스터 <http://www.infomaster.co.kr>

의 경우는 개인이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정보를 매매하는 새로운 개념의 사이트로서 커뮤니티의 대다수가 성인그룹이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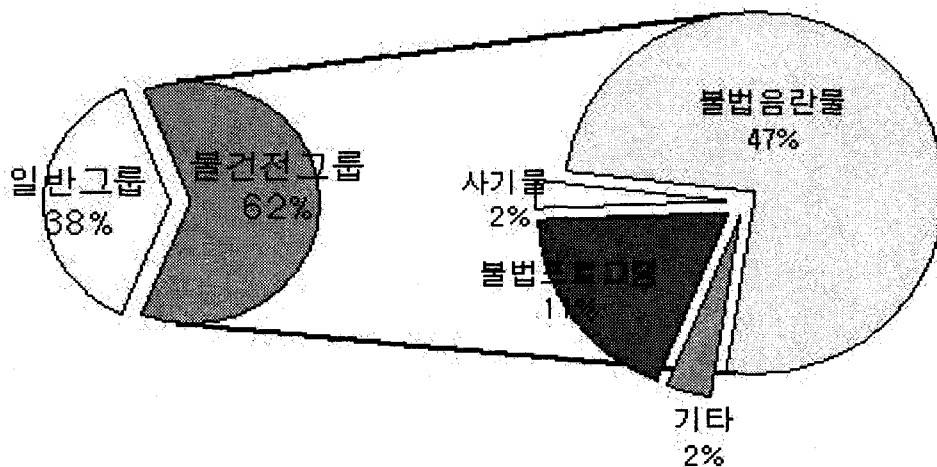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2003 인터넷민간자율규제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커뮤니티 사이트 실태조사에서 불건전 커뮤니티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 대상 7,681개 사이트중에서 불건전 커뮤니티는 62%(4,730개), 건전 커뮤니티는 38%(2,951개)로 나타났다. 다시 불건전한 4,730개 커뮤니티를 세부적으로 보면 성인음란물 3,564개, 불법프로그램 863개, 사기물 127개로 콘텐츠의 절반 가까운 47%가 성인음란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음란스팸 메일

스팸메일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지속적인 광고 및 음란스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개인정보의 입수경로에 대한 불안감 조성, 스팸메일 내용 확인 및 삭제를 위한 시간적 낭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정보제공사업자(ISP)들에게는 인터넷서비스 운영의 장애야기, 스팸의 폭주로 인한 시스템 비용 증가, 수신자들의 항의 및 회원등록 취소 시 처리비용 증대, 신뢰도 저하로 사업상 손

〈카테고리별 불건전 그룹비율〉



※ 출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정보매매 커뮤니티 사이트의 불건전 정보유통 실태조사, 2003. 7.

실 발생, 합법적인 광고메일 및 메일 마케팅 환경의 저하 등의 피해를 주는 등 그 부작용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2003년 음란스팸메일의 유통현황 자료에 따르면 음란 스팸메일이 2002년도에 전체신고건수의 61%로 급증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으며 올해에도 전체 신고건수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신거부, 메일 필터링 시스템, 스팸 신고제 스팸메일 차단 S/W의 보급 등 대비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4. 검색(Search Engine)

불건전 정보에 대한 접근은 대부분 검색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들은 금칙어를 지정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단어 필터링(검색차단)이 되는 사이트도 적용 단어가 한정되어 있고 금칙어도 특수기호나 숫자 등과 조합하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5. 파일 공유(Peer to Peer)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유형의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P2P(Peer to Peer)서비스이다. 국내의 인터넷 사용자의 50.5%가 P2P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75.1%가 하루1시간정도 사용하고 있다. P2P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음란정보의 유통과 저작권 침해에 있다²⁾.

미국의 경우 P2P사용자의 약 40%가 18세 미만 청소년이며 P2P방식으로 교환되는 콘텐츠의 약 42%가 성인물로 추산하고 있다³⁾. P2P를 이용한 불건전 정보를 차단하기 위하여 미국은 아동P2P 포르노보호법(Protecting Children from Peer-to-Peer Pornography Act)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P2P S/W 보급자는 유해한 콘텐츠 유통 가능성 고지, 부모 동의하에 사용권 부여, P2P S/W의 다운로드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등 개발 요구 권한을 연방상무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이다⁴⁾.

IV. 불건전정보의 유통방지 정책 방향

1. 법제도의 개선

법 적용측면에서는 불법적인 음란스팸메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옵트-인(Opt-in)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하고, 음란, 도박 등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 고시를 엄격하게

적용을 검토해야한다.

그리고 해외한글불법사이트에 대한 ISP사업자의 모니터링과 국제관문에서의 자율차단 확대실시뿐만 아니라 포털사업자, 인터넷정보센터(KRNIC),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등 사업자 상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스팸발송자 유통IP차단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2) P2P서비스 이용현황 조사, 전자신문사, 2003. 5.

3) 'Children's Exposure to Pornography on Peer-to-Peer Networks',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Government Reform, 2003. 3.

4) 아동P2P포르노보호법(Protecting Children from Peer-to-Peer Pornography Act)

2. 기술적 대응방안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해외음란 폭력정보등급 DB와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차단S/W(youth.rat) 무료 다운로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음란스팸메일에 청소년 등 이용자들이 무차별 노출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음란스팸잡이”로 명명된 음란스팸을 인식·차단하는 S/W를 보급 중에 있다⁵⁾.

이러한 기술적인 대응은 개발보급 당시에는 최고의 성능과 효과적인 차단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술개발 순환이 빨라 차단효과는 매우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무료보급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란스팸의 차단율을 높게 지속하기 위한 사후관리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통한 사회윤리적 대응

인터넷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올바른 활용방안에 대한 청소년, 교사, 학부모, 사업자 등 대상별 정보윤리 교육 확대실시가 필요하다. 학교와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대상 출장교육 확대, 교사대상 온라인 원격교육 실시, 다양한 정보통신윤리 교육 교재 개발·보급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윤리 분야에 대한 관련 강사양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과정의 개설이 중요하다고 본다.

4.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법·제도 개선을 통하여 불건전정보 유통 관련 사업자 책임규정 명문화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불건전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검색서비스에 성인인증제의 철저한 시행을 유도하고 불량회원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5. 국내외 유관기관간 국제공조체제 강화

불건전정보에 대한 유관기관간에 신고처리 지연, 기관간 공조체계 미흡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스팸대응센터 및 검·경 등 관련기관간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협력방안으로 불건전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신고 시스템 구축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동포르노 유통방지와 해외한글 음란사이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 핫라인협회(INHOPE :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 Providers in Europe)⁶⁾, INTERPOL, CyberTipline(미국의 민관협력 감시망) 등 해외민간감시기구와의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이 적극 요망된다.

5) <http://www.icec.or.kr>

6) INHOPE는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서 1999년 11월에 설립되었다. 주요 목적은 인터넷의 불법 유해 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이고, 아동포르노, 상업사이트, 음란영상, 대화방, 인종차별 사이트 등을 주요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V. 향후 과제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성, 비대면성, 불가시성 등으로 인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국민의 법 관념이나 법의식이 약하다는 측면과 청소년의 경우는 명예훼손 등에 대한 개념정립이 안된 상태로 자신

이 하는 행동이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무감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의 사이버 명예훼손의 유형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이버상의 분쟁조정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연구가 요망된다